

4.1.33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보상기준규정

제정 2012. 05.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초당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본교의 종사자가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 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 대학교는 이 기준 제4조및 제5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 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을 경우 당사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 대학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 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 대학교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당 학교 종사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